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850
----------	-----

2019. 8. 2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19. 8. 7 이상훈 의원 발의 (2019. 8. 13 회부)

### 2. 제안이유

- 생활SOC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수반되는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며, 국무총리 훈령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생활SOC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예로서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열거하고 있

을 뿐, 시민의 편익증진에 필수적인 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문화시설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생활SOC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문화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문화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상훈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을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시설의 범위를 저층주거지에서 도보(10분) 거리내의 시설 위주로 하되, 국토교통부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sup>1)</sup>(2019.1)(이하 “국가기본방침”)에서 정한 마을단위시설(도보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지역생활서비스시설<sup>2)</sup>과의 정합성

---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등의 공급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11개)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7개)로 구분하고 있음.

2) 생활권계획에서는 생활서비스시설을 ‘권역생활서비스시설’과 ‘지역생활서비스시설’로 구분함. 권역생활서비스시설은 이용인구 10만인 단위 수준의 시설로서, 공공부문에서

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sup>3)</sup> 선정 가이드라인<sup>4)</sup> 송부 및 사업신청 안내”<sup>5)</sup>에 따라 신청된 사업지 (17개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가 우선순위를 매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38개 복합화 사업을 보면, 이 조례나 국가기본방침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건강센터,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시설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sup>6)</sup>.

---

주로 공급하는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말하며, 지역 생활서비스시설은 지역주민의 도보권 내에 일상생활 편의시설로서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말함.

- 3)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 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으로, 복합화 대상은 10종 시설\*로서, 10종 시설 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임.(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중앙관계부처 합동, '19.6.12, p.3)

\* △ (문체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등

- 4)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시·도내 시군구별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기초지자체는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및 정산 등을 함. 복합화 10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 하는 경우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현행대비 10%p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 5) 서울시 기획조정실(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과 사업신청 안내('19.6.12)에 따라 각 구청에 사업신청서 등을 '19.7.19일까지 제출받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8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6) 국토교통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대한 국비지원은 3년간 약 2,100억원(가배분액) 규모임.

- 또한 국가기본방침(7.3)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재생기반시설<sup>7)</sup>(붙임 참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훈령<sup>8)</sup>”(제2조)과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계획(안)<sup>9)</sup>(2020~2022)<sup>10)</sup>”에서도 ‘생활기반시설’(생활SOC)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정의하고,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하는 열려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의 편익증진에 필수적인 문화시설을 생활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생활기반

7)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8)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9) 정부는 향후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2)」에 따라, 3년간 30조원 규모의 국비(지방비 포함시 48조원)를 투자하여 문화·체육시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안전 및 생활환경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10)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2019.4.15

시설의 정의와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2)」에 따라 정부가 공급할 시설(문화·체육시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안전 및 생활환경시설 등) 등을 고려할 때,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필요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를 국가기본방침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인프라를 포함하여 공동이용시설과 청소년·아동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생활SOC 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생활권계획상의 생활기반 시설은 도시계획국에서, 저층주거지내 시설은 도시재생실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음.

이 조례 제정안 심사(‘19.4.22) 당시 우리위원회에서는 생활기반 시설의 효과적인 공급과 지역별 안배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관련 부서간 업무분담, 정보공유와 협업, 부서별 업무범위, 공급지역 선정과 필요시설 결정, 시설의 적정규모, 예산지원 방법 및 기준, 예산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현재까지 어떤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락처	02-2180-8205
이메일	kslimga@seoul.go.kr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